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8. 4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, 제12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이0서	04.12.4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	취업지원 종료(중단) 처분	IAP 수립을 위한 상담일자에 미방문 (출석통지 2회 이상 불응)	○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 취소 처분	폐문부재 (수취함 투함)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79-1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6. 8. 4. ~ 2026. 8. 18.(15일간)
5. 기타 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수원고용센터 차명희(Tel. 031-231-786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